



제 439회 국회 (정 기 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전문단체 추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4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시간 보장 등 명시	4
2.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신설 등	9
3. 위험성평가 대상인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포함 등 ..	26
※ 참고자료	43
1. 위험성평가 유사제도 특징 및 제재 수준 비교	43
2.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	44

I. 제안경위

2026년 2월 6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고 있음.

이에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공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노동조합·사업주단체·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제7항·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시간 보장 등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해 시간과 그 외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를 지도·감독할 책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근로자·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 등이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략) <u><신설></u>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그 외 조치기준 마련과 사업주</u>

9. (생략) ② (생략)	<u>지도 및 감독</u>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 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 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 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 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 ----- ----- ----- ----- ----- ----- ----- ----- ----- -----.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 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 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 및 제5조¹⁾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²⁾, 명예산업안전감독관³⁾ 등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활동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1)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과 그 외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사업주 등이 근로자·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근로자 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제4조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보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참여 및 활동보장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제안이유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만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참여·활동한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행정해석을 해왔고, 현장에서도 안착된 상황이므로 시간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4)에서 ‘산업안전 활동’을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

4)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

로 규정하여 임금 손실 없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지역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의무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근로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주 의사 등과 관계없이 위촉하도록 하고, ② 노동조합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관련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권을 규정하고 이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⑦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⁵⁾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u>정하는 업무</u> ⑤ <u>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u> ⑥ <u>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⑦ <u>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⑧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절차와 제7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0조(벌칙) ----- ----- -----
---	--

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 8.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

2. ~ 4. (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1. 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제65조제1항-----

5.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

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신 설> 4. ~ 8. (생략) ⑤ ~ ⑦ (생략)	----- ----- ----- ----- ----- ----- ----- ----- ----- ----- 3의2.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한 제23조는 2026. 2. 19. 일부개정되었음. 개정안은 2026. 2. 6. 발의된 것으로 의안제출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개정문이 작성됨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3조⁶⁾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을 의무화하고,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근로자 등의 추천 시 사업주의 의사 등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
- 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제도의 활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에 참여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수행 시간을 관련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 관련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을 하는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3조제1항은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등과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 등의 참여와 지원 촉진 및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제도적 수단⁷⁾의 하나로, 개정안 발의 이후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제23조제2항)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3조제2항은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장 소속 여부에 따라 그 업무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⁸⁾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7)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 노동부, 2004.12.(고용노동부 홈페이지_정책소개_정책자료실)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과제로 ‘노사참여적 산재 예방활동 기반조성’을 제시하고, 그 세부 추진과제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8)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에서 소속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위촉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함)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사업장 소속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함)을 구분하여, 사업장 내 업무는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체계하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업장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3조제3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인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9)에 따른 근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9)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

로시간 면제한도가 초과된 산업재해 예방활동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하도록 보장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무효로 함으로써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노조의 자주성 확보 사이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¹⁰⁾,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사업장 근로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모두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원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자료

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제출 요청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노동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행법 제56조¹¹⁾는 중대재해 등 발생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재해 원인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3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참여는 현행법 제36조¹²⁾에서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

11)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2)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근로자대표 요구 시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 제170조제1호는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근로기준법」¹³⁾에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에 따른 구제 및 지위 회복에 대하여 규정하고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제23조제1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재도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전문단체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추천받은 사람을 위촉하고 있으나, 추천된 자에 대해 사업주·조합원 등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등 위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별로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제23조제2항의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하여,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업장 소속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구별하고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은 현행 사업장 소속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동일할 수 밖에 없고, 현재도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 중 사실상 추천받은 사람을 사업장 소속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어 개정의 실

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제23조제3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 내용·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제23조제4항과 같이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출입, 점검 참여 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소속이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동일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제23조제5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에 대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일방적인 권한이나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3조제7항과 관련하여 법률에는 협의회, 교육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¹⁴⁾에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예규)」에서 협의회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위험성평가 대상인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포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위험성평가 대상인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종사자의 작업행동”으로 변경하며, ②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③ 사업주가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시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④ 위험성평가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며, 해당 참여시간을 관련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⑤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⑥ 위험성평가 결과와 위험성 감소대책 등 주요 내용을 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⑦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 및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15)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종사자는 이 법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
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
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
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
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
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
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인

2.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
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

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⑧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 8.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⑩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0조(벌칙) -----

-----.

2. ~ 4. (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1. 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제65조제1항-----

5.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

3의2.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¹⁶⁾은 위험성평가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15)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제36조는 2026. 2. 19. 일부개정되었음. 개정안은 2026. 2. 6. 발의된 것으로 의안제출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개정문이 작성됨

1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 요구 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상시적인 근로자 주지,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험성평가에 근로자와 참여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충실히 반영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이 평가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물리적·기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다양화되고, 도급관계에서는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

한 작업공간의 위험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평가의 대상과 참여 범위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의 사전 교육부터 사후 평가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까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고지,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제재 등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일부 현행법에 반영¹⁷⁾되었고,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분은 2026년 2월 법개정시 논의된 내용¹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지난 심사에서 직접 논의되지 않은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36조제2항·제3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및 제3항¹⁹⁾을 법률에 상향한 것으로, 도급사업

17) 2025년 11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월 19일 공포됨.

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2025-11-21)

19)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장 등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음.

다만,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법률에 그대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의무주체를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로 규정하였는바, 이를 현행법²⁰⁾의 용어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참여 기간을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제36조제5항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된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¹⁾.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에 고객의 폭언·폭행 명시, 근로자대표 등의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1) p.19~20 참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 참여, 위험성평가의 보고 및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은 선행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음.

당시 현행 규정에 의한 포섭 가능성, 위험성평가의 특성, 사업장 등의 부담, 제재수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안 제36조제1항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험을 명확히 드러내고 보호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고객의 폭언·폭행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포함되어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며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음.

둘째, 안 제170조제1호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와 근로자·근로자대표 등을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험성평가 이행 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제재 규정 도입의 목적이 직접적 공익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이행력 제고’에 있으며, 유사 제도의 제재

규정과의 균형²²⁾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었음.

셋째, 근로자·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36조제5항과 제170조제1호는,

근로자대표 의무 참석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해당 직무·공정과 무관한 분야를 담당하는 근로자대표의 일률적인 위험성평가 참여 의무화는 형식적인 참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유사한 산업재해 예방 제도에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들을 해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를²³⁾ 고려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하고, 유

22) 참고1 유사 제도의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처벌 수준과 참고2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 참조

23)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

사 제도의 제재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위험성평가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종사자에게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로 주지시키도록 한 개정안 제36조제7항은 같은 내용의 당시 개정안이 ‘주지시키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

다섯째,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기록·보존 의무와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 제36조제8항과 해당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제175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담 인력 등 위험성평가 실시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장과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상당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300만여 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자료를 취합·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면서 감독기관 요구시 제시하도록

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분만 반영하여 의결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이행의 정기적인 감독을 규정한 개정안 제36조제9항과 관련하여, 선행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기적인 위험성평가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을 포함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면 사업장 감독·점검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내용이 제외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선행 심사에서 위험성평가의 정의,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결과 공유·제출 및 점검, 참여시간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2026년 2월 19일 법률이 개정된 만큼, 추가적인 사업주 의무나 제재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1

위험성평가 유사제도 특징 및 제재 수준 비교

구분	적용 범위	제도 목적	처벌 수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법 제42조)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인 경우에 한해 제출 의무 발생 • (제조) 위험설비 설치·이전·변경 시 • (건설) 일정 높이, 면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착공 시	■ 고위험 기계·설비의 설치·이전·변경, 대형 건설공사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가동 이후 개선이 어렵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 → 공사 착공 또는 설비 설치·이전·변경 작업 시작 전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필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조) 300만원(1차) → 600만원(2차) → 1,000만원(3차) (건설) 1,000만원(1~3차 위반 동일)
공정안전 보고서 (법 제44조)	■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고위험사업장	■ 화학물질의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노동자 및 인근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 → 해당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공정·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1차) → 600만원(2차) → 1,000만원(3차)
안전보건 진단 (법 제47조)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잠재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개선하기 어려움 → 전문기관의 조사·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 개선을 추진 필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00만원(1~3차 위반 동일)
안전보건 개선계획 (법 제49조)	■ 재해율 급증, 중대 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업장	■ 재해다발, 중대재해 발생, 작업환경 불량 등으로 개별적인 시정조치만으로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사업장 존재 → 사업주가 시설·설비, 작업방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 유도 필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진단 無) 500만원(1차) → 750만원(2차) → 1,000만원(3차) (진단 有) 1,000만원(1~3차 동일)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상한액별 위반행위 분류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주요 위반 행위
5,000만원 이하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기관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농도기준 준수 등에 관한 의무 위반 ▲ <§119>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후 건축물 등 철거 ▲ <§124> 석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건축물 등 철거
3,000만원 이하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보고 및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의무 위반 ▲ <§54>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거짓 보고 ▲ <§79>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미시행 등
1,500만원 이하	■ 법정 조사·진단·보고 및 휴게·위생시설에 관한 의무 위반 ▲ <§47> 안전보건진단 거부·방해, ▲ <§57> 산업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거짓보고 ▲ <§64> 도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장소 미제공 및 이용 협조 거부 ▲ <§128> 휴게시설 미설치, ▲ <§141>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1,000만원 이하	■ 중대한 유해·위험의 예방을 위한 계획·진단·개선 및 안전성 확인 의무 위반 ▲ <§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44>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 <§47> 안전보건진단 미실시, <§49>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시행 ▲ <§67>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등 ▲ <§95>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 사용
500만원 이하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운영,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근로자대표의 참여·의견청취 및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등에 관한 의무 위반 ▲ <§15~19, 22, 24~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미준수 ▲ <§26, 44, 47, 49, 125, 13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공정안전보고서·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참여·결과 공유 등 근로자대표의 권리 제한 ▲ <§108, 109, 112~114, 125> 유해 화학물질에 자료 미제공, 작업환경측정 미준수 결과 공유 미실시 등
300만원 이하	■ 직무교육, 정보 제공·표시, 지도계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의무 위반 ▲ <§32> 안전(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미실시, ▲ <§35> 근로자대표 요청사항 미통지, ▲ <§73> 건설공사 지도계약 미체결, ▲ <§111, 115> MSDS 미제공, 경고 미표시 등, ▲ <§125>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보고, ▲ <§134> 건강진단 실시 결과 미보고